

노스(D. North)의 新制度經濟理論

朴 英 秀

1970년대 이후로 노스(D. North)는 주로 경제이론가로 활약하게 되는데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해박한 그의 지식을 통해 ‘新制度學派 經濟學’이라는 이론분야에서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노스의 제도이론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新古典學派와 進化論의 制度理論을 제시한 오스트리아學派와 마찬가지로 方法論的 個人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고전학파적인 ‘經濟的 人間(homo oeconomicus)’의 시각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인간상을 상정한다. 제한된 지식과 무지의 행동을 고려한 경제과정의 분석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이념에 의해 규제 받는다’는 견해는 ‘學習하는 人間(homo discens)’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의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행동이론은 진화론적 제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상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노스의 신제도경제이론을 특히 오스트리아학파의 진화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그의 연구성과 중에서 제도이론의 영역에 국한하고자 한다.

1. 序 論

노스(Douglas North)에 의하면, 사회의 制度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動因이다(North(1992, p. 127)). 그는 ‘제도는 왜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制度는 인간행위의 相互作用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직들을 형성하는 ‘誘因의 틀(the framework of incentives)’을 부여하는 公式的 規則(법, 헌법, 규칙)과 非公式的 制約(관습, 행위규약, 행동규범)이라고 정의된다(North(1997, p. 6)). 나아가서 그의 방법론은 사회의 개별구성원의 행위를 분석하여 사회전체의 사회적·집단적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方法論的 個人主義에 가깝다. 이것은 다음의 명제에서 잘 나타난다: “제도란 개인들의 상호작용 때문에 형성되고 진화한다(Institutions arise and evolve because of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s.) (North(1986, p. 231), North(1992, p. 6)).”

구체적으로 그는 제도의 進化를 分業 및 特化的 증대에서 찾고 있다. 인간이 자기욕구의 실현을 위해 자급자족의 경제행위를 하지 않고 분업을 통해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한, 交換의 福祉增大效果(gains from trade)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

이다.

한편 노스는 코우즈(R. Coase)의 영향하에 新古典學派에서 등한시되었던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 즉 개인의 교환행위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낮추고,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을 높이는 ‘規制者’로서의 규칙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도는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개인들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만큼,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선택영역을 정해주는 한편 그것을 제한하게 된다[North(1992, p. 4, 6, 117 이하), Priddat(1993, p. 607)].

요컨대 노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新制度經濟學(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5가지 基本原理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1) 개인들은 높은 정보비용의 제약 하에서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 (2) 경제적 교환행위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은 委任者-代理人(principal-agent)問題를 야기한다.
- (3)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비용이 소요되는데,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집행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國家論(Theory of State)이 필요하다.
- (4) 제도적 진화론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회의 財產權(property rights) 구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를 연구한다.
- (5) 개인의 選好(preference) 및 理念(ideology)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들을 통해 개인의 중요한 행동영역 및 거래비용이 함께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노스의 신제도경제이론을 특히 오스트리아學派의 進化論的 制度理論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범위를 그의 연구성과 중에서 제도이론의 영역에 국한하고자 한다.

(1) 코우즈는 두 논문, “The Nature of the Firm”(1937) 및 “The Problem of Social Cost”(1960)에서 去來費用이라는 개념을 전개하였다. 전자에서는 市場經濟의 내적 제도로서 기업의 존재를 구명하는 한편, 후자에서는 외적 제도를 분석하면서 이른바 ‘코우즈 정리’를 정립했다. 去來費用이라 함은 거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데, 거래상대를 찾는 비용, 거래조건을 확정하는 비용, 그리고 거래조건의 이행을 강제하고 감독하는 비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

2. 人間行動理論

‘효용극대화 주체로서의 개인’이라는 新古典派의 명제는 여러 방향에서 확장되어 왔다. 노스 역시 그의 『제도, 제도적 변화 및 경제성과(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에서 인간행위 동기의 복잡성 및 주관적 지각성을 인정함으로써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이라는 단순명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즉 근본적인 무지상태에서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개인의 주관적 지각성으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의 행동은 불완전한 수렴성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제도이론은 단순한 거래비용이론에만 입각하고 있다기보다, 인간행위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심리적 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제도이론은 去來費用理論과 人間行動理論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North(1992, p. 32)].”

반면에 신고전학파 이론은 主觀性보다는 客觀的合理性을 가진 인간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행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희소성의 실물경제에서 경제주체들간의 競爭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관적 합리성이 객관적인 여건들과 일치하거나 근접한 경제주체들만이 성공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축출된다. 즉 개별 선택행위 모델들 간의 경쟁압력이 본질적으로 합리적 행동을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North(1992, p. 24)].⁽²⁾

노스는 전통적 인간상인 ‘經濟的 人間(homo oeconomicus)’으로는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자의 지식 및 계산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여건에서 인식론적 심리학이론에서처럼 ‘주관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은 이용 가능한 지식과 계산수단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North(1992, p. 28)]. 명시적인 지적은 없었지만, 이러한 시각은 제한된 지식이라는 구조적 불확실성 하에서 인간은 단지 主觀的合理性의 행동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인간상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³⁾ 이런 측면에서 신고전학파의 객관적 합리성을 대변하는 新制度學派 학자들과는 다소 다른 인간상을 구현하고 있다[Elsner(1987, p. 6), Richter und

(2) 특히 資本市場은 빠른 반응속도와 높은 정보 강도 때문에 인간행동에 대한 新古典學派의 가정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역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

(3) “한 사람의 행위자가 타인들의 행동에 관하여 일관된 개념을 형성하고 이 지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타인의 신념과 욕구에 대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최소량은 얼마인가?[North(1992, p. 18)].” 또 사이먼(H. Simon)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개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North(1995, p. 7)].

Bindseil(1995, p. 132)].

인간이 주관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행동하고자 할 때 당면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정보처리의 용량 및 시간적 제한 때문에 시장여건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개인들은 불확실성 하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잘못된 市場信號(market signal),⁽⁴⁾ 부족한 정보의 피드백효과(따라서 보다 나은 행동대안에 대한 무지), 및 단지 조건부로 반복되는 의사결정 상황이 야기된다(North(1992, p. 29, 128)).

한편 ‘利己的 效用極大化를 추구하는 인간상’이라는 신고전학파 가정에 대해서 특히 비판적이다. 즉 이러한 인간상에 기초한 모델로는 제대로 기능하는 안정적 사회에서 순수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North(1988, p. 12)). 인간이 효용극대화를 위해 피해갈 수 있는 사회의 準則을 준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理念(ideology)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인간은 자기가 처한 외부환경에 대해 주관적, 규범적 모델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및 윤리적 규범의 결과로 생겨난 행동의 제약조건이 없이는 안정적 사회질서는 존속하기 어렵게 된다(North(1988, p. 18 이하, 132), Richter(1996, p. 16)).⁽⁵⁾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도 이기적 효용극대화라는 사회구성원의 인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규범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관적인 선호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스는 主觀的 選好와 制度的인 基礎條件(Rahmenbedingungen)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된다.⁽⁶⁾

노스는 거래비용이론 외에 協力(Cooperation)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도구로서 게임理論을 응용했다. 게임이론은 경기참가자의 부의 극대화 추구행위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는 어떠한 조건하에 경기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협력전략을 선택하게 되는가가 문제시된다. 協力의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① 반복게임(repeated game), ② 여태까지의 상대방 행동에 대한 완전한 정보의 존재, 및 ③ 소수의 참가자라는 조건하에서, 각자는 상대방과의 협조가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은 人的去來가 이루어지는 소규모사회를 특징짓는 조건들이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 즉 ①

(4) 예를 들어 화폐정책에 의해 왜곡됨으로써, 더 이상 현실의 희소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시장 가격.

(5) “제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기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 불확실성은 해결할 문제의 복잡성과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해결의 소프트웨어(컴퓨터용어로 비유하자면) 때문에 발생한다(North(1992, p. 30)).” 여기서 “제도는 事前의(ex ante)으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6) “아이디어, 조직화된 이념, 및 심지어 종교적 열광까지도 사회 및 경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North(1992, p. 52)).”

반복되지 않는 게임(an end game, one-shot game), ②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부재, 및 ③ 다수의 참가자의 경우에는, 협력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것은 현대경제에서 非人的(Impersonal) 去來의 상호의존적 세계를 특징짓는 조건들이다(North(1992, p. 14 이하), North(1997, p. 11)).

게임이론은 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것이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구해 왔다[Hermann-Pillath(1996, p. 124)]. 예컨대 액슬로드(Axelrod)에 따르면 이른바 ‘눈에는 눈’이라는 ‘應手(tit-for-tat)’ 전략이 게임상태에서 다른 전략보다 우월하다. 즉 반복게임에서 승리의 전략은 같은 행위에 대해 똑같이 대응해주는 것이다. 협력은 협력으로 報償을 해주고, 비협력은 비협력으로 膽懲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이론에는 가정상의 결함이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균형상태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고도의 지식을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 자기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호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전제된다(North(1992, p. 17 이하), Dietl(1993, p. 83)). 이러한 가정은 경제주체의 부를 극대화하는 행동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식이 施行錯誤(trial-and-error)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경우에는, 인간행동을 ‘最適行動’으로 특징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게임이론의 전제는 전통적으로 균형개념에 의존하는 신고전파 이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특히 市場過程(market process)이나 學習(learning) 또는 發見(discovery)의 과정을 강조하는 오스트리안學派의 시각에서 보면 결정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⁷⁾

3. 制度理論의 去來費用論的 定着

거래비용에 관한 코우즈의 이론적 唱導와 그 示唆點을 연구하려는 일군의 학자들과의 간밀한 교류가 노스로 하여금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去來費用理論을 응용하게끔 이끌었다(Fogel(1997, p. 21)).

거래비용이론은 신고전파적 접근의 한계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노스 자신의 인간행동이론 및 학습과정이론의 기반이 된다. 거래비용론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情報費用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측정, 확정(합의 또는 계약체결), 감독 및 탐색에 수반되는 비용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으

(7) 근년에 와서 이른바 진화적 게임이론(evolutionary game)과 같은 이론적 확장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본적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로 작용한다. 이것은 복잡한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準則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Richter(1990, p. 75 이하)).

거래비용은 총생산비용의 일부가 되며, 따라서 교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가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다만 제도는 거래비용을 낮출 뿐 아니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적 시장보다도 원천적으로 불완전한 政治的 市場에서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어디에서나 制度體系란 비용을 낮추는 제도와 비용을 높이는 제도의 혼합체”라고 할 수 있다(North(1992, p. 77)).⁽⁸⁾ 政治市場에서 거래비용이 높다는 가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특유한 정보가 갖는 비대칭적인 기초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노스는 이 분야의 이론을 전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이자율 수준은 아마도 제도적 기초조건의 효율성에 관해서 외견상 가장 명확하게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다(North(1992, p. 83)).”

정치적 시장과 경제적 시장의 차이점은 정치참여자의 반응(투표)이 불완전하다는 점, 즉 거래되는 대상은 표(투표약속)이며 투표자는 자신의 한 표가 갖는 효과가 극히 작은 만큼 정보획득 유인이 거의 없으며, 또한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이고 경쟁체제가 비효율적 이므로 ‘理念的 固定觀念’(Ideological stereotyping)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⁹⁾ 요컨대 효율성 유인은 정치시장의 구조와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稀釋되는 것이다(North(1997, p. 9)). 이에 비하면 경제적 시장은 거래되는 재화용역의 물리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客觀的 尺度’(크기, 무게, 색깔 등)를, 관련된 소유권의 추상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法的 基準을 각각 사용한다. 또한 합의의 이행(강제)은 사법체제에 의해 수행되고 경쟁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강력한 요인으로, 경제적 시장에는 높은 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North(1997, p. 9)). “재산권을 정의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치체제라는 점에서 보면, 효율적인 경제시장이 매우 예외적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North(1994, p. 361)).”

제도적인 변화의 분석을 위해서는 委任者-代理人(principalagent) 모형을 원용하는데, 대리인의 효용함수, 즉 행정부·사법부·입법부 구성원들의 세계관 또는 이념이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North(1992, p. 26, 28)). 위임자를 위해 대리인을 감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완

(8) 이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노스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안고 있는 불충분한 발전능력의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North(1992, p. 71, 81, 83 이하)).

(9) A. Hirschman의 “exit-voice” 분석틀에서 본다면, 전자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의 voice, 후자는 소극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exit(경제적 거래의 경우에, 거래거절이나 계약파기 등)에 해당된다.

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대리인에게는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적인 영역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저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게 된다[North(1992, pp. 38-42, 65)].

스미스(Adam Smith)의 사회·제도이론과 비교해 볼 때, 경제주체의 행동규제에 관한 노스의 논의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스미스는 인간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율체계의 예로 써, 良心(Gewissen), 同情(Sympathie), 相互扶助(Wechselseitiger Beistand), 일반적인 공정한 行爲準則(Allgemeine Regeln gerechten Verhaltens) 등을 거론하고 있다[Krüsselberg (1984, p. 188)]. 즉 인간행위가 더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위계적인 감시체제를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음의 가설이 제기될 수 있다: 한 감시체제가 불충분할 때, 나머지 감시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감독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노스는 스미스에 대한 언급 없이 去來費用의 관점에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약들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비공식적 제약은 행동규범이나 관습 등이며, 공식적 제약은 제반 사회적 규칙과 제도이다(North(1992, p. 43, 47 이하, 98), Priddat(1993, p. 604 이하), Richter(1996, p. 26)).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에는 인습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이 공식적 제약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비공식적 제약은 규격화되거나 또는 규칙의 형태로 굳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비용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North(1992, p. 49 이하)). 다만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준칙들을 공정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질서의 기능 및 사회적 요청을 위한 전제조건을 거론하는 단계에서 스미스의 기본사고가 응용되고 있다고 하겠다(North(1992, p. 91)).

비공식적 제약 외에 공식적 제약 즉, 實定法 規則도 사회의 기능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 쪽 끝에는 금기, 관습, 전통과 같은 비공식적 제약이 존재하고, 다른 쪽 끝에는 成文憲法 및 規則이라는 공식적 제약이 존재하는 사회규범의 스펙트럼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North(1992, p. 55)).

요컨대 ‘사회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노동 및 지식의 분업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규범, 관례 및 관습에서부터 성문법 및 헌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규칙이 共同 進化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적 성격의 규칙들이 아니라 보완적이며 완결적 성격을 갖는 규칙의 도입이 거론된다. “… 전형적으로 헌법은 개정될 때 일반법의 경우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끔 구상되며, 마찬가지로 성문법은 개별적인 계약행위보다 그 개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North(1992, p. 56)). 따라서 복지를 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능하는 법적인 틀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가 공권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권력의 남용 가능성이나 제도의 정체성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의 변화는 이같은 제반 문제들을 인식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制度의 變化

4.1. 效率性 問題

제도변화의 이론은 國家理論 및 理念理論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노스의 입장이다. 또 사회의 진화는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발명과 혁신에 대한 성향은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다[North(1988, p. 16)].” 그러므로 “지식, 특히 기술적 지식의 수준 및 성장률은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틀과 함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한다.”는 가설이 제시된다[North(1988, p. 17, 89)].

제도적 틀의 의의는 특히 발명의 경우처럼 外部效果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된다. 혁신에 의한 경제적 수익이 충분히 内部化(internalization)되지 못하면, 혁신의 개인적 동기(incentive)가 저하되어 창조행위가 감소한다. 따라서 혁신활동에서 생겨나는 수익과 비용을 内部化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된 법구조는 모든 거래에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재산권을 명확하게 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거래비용을 낮추게 되어, 그 결과로 현저한 효율성증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North(1988, pp. 36-38)]. 즉 법은 公共財로서의 順기능을 갖게 된다.

한편 장기간 지속되어 온 社會的 非效率性的 경우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여기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규칙을 수립하고 보장하는 지배자의 이해관계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흥미로운 것은 競爭이란 분석시각인데, 사회적 규칙체계간의 경쟁의 부재는 경우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사회질서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논의가 어떠한 效率性 개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고전학파에서 가정하는 ‘파레토 최적’의 개념은 적절한 분석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개념은 제도적 틀을 분석에서 완전히 사상해 버리거나, 아니면 최적 상태를 미리 가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 대신 適應效率性(adaptive efficiency)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進化에 대해 安定的인(evolutionsstabil)’ 규칙과 사회질서만이 효율적인 질서로 증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 대한 외부충격과 내적 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規則이 필요하게 되며,(10) 이러한

규칙은 效率的인 것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식과 교육의 습득을 유리하게 하는 규칙, 혁신을 야기하는 규칙, 위험부담을 감수했을 때 응분의 보상을 해주는 규칙, 및 인간의 창조적 행위를 고무하는 규칙 등[North(1992, p. 96)]. 규칙의 효율성에 대한 척도로서 노스는 장기적 經濟成長率을 사용하고 있지만[North(1992, p. 109)] 이런 점은 몇 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총체적인 경제성장률보다는 일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이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다양한 外生的 및 內生的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거나, 국가경제간의 상대적 성장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는 척도에 의해서 어떻게 경제적 효율성을 재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지식의 증대와 전파를 위해서, 경제성과와 투자간에는 중요한 보완관계가 성립한다.” 즉 지식과 숙련된 기술에 대한 誘因체계의 존재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기초여건이 된다는 것이다[North(1992, p. 95)]. 이런 의미에서 人的資本(human capital)의 질과 그 효율적 이용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Engelhard, Geue und Sch del(1997, pp. 221-224)).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시각에서 본다면, 경제성장이라는 巨視的 판단기준보다는 인적자본의 질과 개인적인 행동 잠재력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는 微視的 판단기준이 중요하다.

요컨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靜態的 기준을 거부하고 대신에 ‘적응’이라는 動態的 효율성 개념이 중요시된다. 適應效率性이라는 판단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질서의 준칙, 즉 경제적 거래비용을 가능한 한 零에 근접하게 하는 준칙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North(1992, p. 129, 140)]. 노스는 특히 시장의 기능을 위해서 제도가 갖는 의미를 중시하면서, 시장이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지적한다[North(1986, p. 236)]:

- (1) 잘 알려져 있으면서 널리 수용되는 法體系.
- (2) 이러한 법체계가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國家 公權力.
- (3)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참여자의 행위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道德的 準則 내지 慣習.

이 중에서도 재산권의 규정과 이행은 거래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며, 따라서 경제단위의 효율성을 결정한다. 즉 경제구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財產權이 중요하다 (property rights matter.)” (Richter(1994, p. 13)).” 한편 시장의 적합한 규칙의 틀뿐만 아니

(10) 이 점은 최근의 노스의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 정치적 차원의 규칙도 필요한데, 예컨대 법률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 정치적으로 잘 기능하는 압력단체들의 필요성, 및 정치적 패배자에 대한 거래비용의 효율성 기준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도 중요하다.⁽¹¹⁾

그렇다면 효율적인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노스는 비공식적인 제약과 이로 인해 감소되는 거래비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시장에서는 위임자에 대한 대리인의 활동영역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North(1992, p. 164 이하)). 따라서 “제도의 형성은 효율적인 재산권의 수립과 보장을 위한 내재된 誘因體系를 갖고 있는 정치조직에서만 가능하다(North(1992, p. 167)).”

4.2. 制度的 變化的 決定要因

제도적 변화를 결정하는 主要因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1) 相對價格의 변화, 및 희소성과 기술의 제약을 받는 情報費用의 변화.
- (2) 소비자 選好의 변화.
- (3) 경제주체들의 學習(North(1986, p. 234 이하), North(1989, p. 665 이하), North(1992, p. 98 이하), North(1994, p. 362)).

우선 相對價格의 변화는 경제주체들에게 그들의 계획을 변경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며, 이를 통해 생산요소들이 수익성이 보다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같은 적용과정은 情報費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정보비용이 기술의 진화에 의해 변화하게 되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제도의 변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요인들은 극소수만이 外生的이고, 대부분은 內生的인 요인으로 간주 할 수 있다(North(1988, p. 9)). 學習과정에 기초한 인간의 행동은 한 사회의 정보비용, 상대가격, 및 지식수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¹²⁾ 즉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상대가격은 영향을 받으며, 상대가격의 변화는 다시 제도의 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orth(1992, p. 99)).⁽¹³⁾

개인적 選好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理念의 작용이 강조된다. 개인들의 의견, 독단, 유행, 및 이념은 인간의 교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한 개인선행의 변화는 제도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개인선행의 변화에 상응하는 제도는 소비주체의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willingness to pay)을 더욱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North(1992,

(11) “시장에서 실패한 경제적 조직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패배한 조직체를 없애는 규칙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North(1992, p. 88)).”

(12) 학습의 주체로는 주로 기업가만이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13) “The speed of economic changes is a function of the rate of learning, but the direction of the change is a function of the expected payoffs to acquiring different kinds of knowledge[North (1994, p. 362), North(1992, p. 11)].”

p. 101)]. 무엇보다企業家의 활동이 변화의 중요한 동인이다. 그들은 제도에서 야기되는 유인체계에 적극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제도가 게임의 규칙이라면, 조직체와 그 기업가들은 선수이다(North(1994, p. 361)).” 제도적 규제와 시장에서의 競爭은 재산을 극대화하려는 기업가의 행동영역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경제주체들은 지식과 숙련된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만일 규칙의 구조에 의해 生產的 행위보다 再分配的 행위에 보다 많은 유인이 주어지게 되면, 이윤을 얻기 위한 기업가들의 경제 행위가 조장된다. 이윤이 돌아오는 방향으로 시도된 행위에 의해서 제도적 여건도 역시 변화한다. 단기적 이윤을 기대하는 행위는 종종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제도적 변화의 장기적인 ‘發展經路(Entwicklungsfpad)’를 함께 결정하게 된다. 투자지출의 경우에, 경쟁체계하에서 기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지향하지 않고, 흔히 단기적 또는 중기적인 이윤을 기대하여 투자하게 된다(North(1989, pp. 666-668)). 자기 자신의 성공을 지향하는 기업가의 행동과 그 결과인 기대수익과 실적과의 차이는 거의 자동적으로 제도적인 결함이 봉합되도록 유도한다. 이같은 현상은 항상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제도란 원칙적으로 효율적인 요인과 비효율적 요인의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흐만(L. Lachmann)의 지적처럼, 진화적 과정 중에는 제도구조의 內部整合性(Kohärenz)이 완전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커즈너(I. Kirzner)의 지적처럼 경제적 기업가에 유사한 ‘政治的企業家’의 개념이 필요한데, 이들은 제도적인 조정상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봉합하는 진취적인 정치인으로서 제도의 구조에 내재하는 內部整合性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Schmidtchen (1989, p. 172)).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어떤 유인체계가 정치적 기업가로 하여금 제도적 調整의 결함을 봉합하도록 작용하는가, 정치적 기업가들이 과연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등. 시장차원에서는 이윤동기가 기업가의 행위를 유발하고 때로는 의도적 행위의 결과가 아닌 協力의 결손을 봉합하도록 만든다. 반면 정치적 차원에서는 이윤이라는 유인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權力行使와 再選에 대한 욕구 및 政治理念의 욕구라는 유인체계가 주가 된다. 위임자-대리인 모형에서 볼 때, 대리인이 제도의 변화를 원하는 위임자의 목적함수와 함께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렇지만 제도적인 개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위임자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조정의 결함을 제도적인 공급을 통해 봉합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대리인에 대한 유인체계는 시장에서 보다 약하다. 더욱이 제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제약 때문에 정치적 유인체계는 설계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스의 제도이론은 세번째 요인인 개인의 學習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을 보인다. 변화의 과정을 연구해 온 결과, 상대가격, 숙련기술, 정보비용, 및 제도의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학습과정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偶然, 學習, 그리고 自然淘汰, 이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한다(North(1992, p. 103)).”

노스는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이것은 제도변화에서 나타나는 경제발전의 經路依存性(path dependence, Pfadabhängigkeit)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¹⁴⁾ 만약 零의 거래비용(Transaktionskosten von null)을 가진 제도가 존재한다면 역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상대가격 또는 소비자선호가 변화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제도가 즉각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로의존성이 작용하는 경우, 기술의 점진적인 변화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접어들면 보다 비효율적인 기술이라도 더 우월한 대안적 기술보다 선호되는 결과가 가능하게 된다(North (1992, p. 110 이하)).⁽¹⁵⁾

경로의존적 발전과정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산출량 증가에 따라 단위비용을 급속하게 감소시키게 되는 높은 固定費用, ② 생산물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생산비 인하 혹은 제품개선을 가져오는 學習效果, ③ 유사한 다른 대리인과의 협조를 통한 이익을 놓는 調整效果, ④ 시장판매량의 증대가 향후 판매량 증대의 기대를 강화하게 되는 適應的期待 등.

이런 요인들을 통하여 正의 거래비용을 가진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① 다수의 解가 가능하고 결과가 확정되지 않는 複數均衡(multiple equilibria) 상태, ② 더 나은 기술 대신에 더 못한 기술이 채택될 수 있다는 非效率性, ③ 일단 解에 도달하면 그로부터 탈출이 곤란해지는 固着效果(lock-in), ④ 작은 역사적 사건이나 우연한 상황의 결과가 解를 결정하게 되고, 일단 그렇게 되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특정한 경로로 향하게 하는 經路依存性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발성(우연성)이 제도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이러한 인식이 제도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합리적 선택의 모형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노스가 의문시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것은 제도변화의 이론을 전개하는

(14) 여기서 그는 영국 및 북미지역과 스페인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서로 다른 발전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North(1992, p. 117 이하, 133-139)). 예를 들어 그는 스페인의 교회와 정부가 보유했던 경제적 거래에 대한 통제를 들고 그것이 17, 18, 19세기 스페인과 그 식민지들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했음을 지적한다. 대조적으로 같은 시기에 경제활동에 대한 교회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함으로써 영국과 그 식민지들은 급속한 구조변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했다(Fogel(1997, p. 24)).

(15) 이런 경로의존성에 대한 실례로서, 모터 기술에서 벤진모터가 덤프모터에 거둔 승리를 예시하고 있지만, 타이프라이터, 비디오카세트 등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어 왔다. 다만 대안들간의 상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데에는 順次的 選擇(Sequential choice)의 모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North(1992, pp. 111-113), Fogel(1997, p. 23), Schreiter(1993, pp. 337-340)].⁽¹⁶⁾ 따라서 역사의 변화는 특정한 문화적 틀 안에서 얻어진 경험에 따라 제도적 틀의 진화를 가져온다.⁽¹⁷⁾

경로의존성은 과거의 경험 및 사고가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어떻게 비효율적인 제도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단계에서, 노스는 과거 자신도 지지했던 ‘制度的 效率性’의 명제 (Die These der institutionellen Effizienz)를 비판하게 된다. 효율성명제의 핵심내용은 ‘상대가격 및 제도 간의 경쟁은 거래비용을 낮추는 제도의 설립을 촉진하는 유인체계를 만들어 냈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효율적인 제도적 형태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스는 이것을 부정하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었던 사회구조의 국면은 지배자 (혹은 교섭력을 가진 계급)의 이익 추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지배자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산권 법제를 만들게 되며, 따라서 비효율적인 재산권 법제가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North(1992, p. 8)]는 ‘非效率性 명제 (Die Ineffizienzthese)’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인 진화가 방해받는 상황은 위임자-대리인 모형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대리인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사용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위임자의 이익을 회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North(1992, p. 26), Richter(1994, p. 54)]. 일반적으로 代理人의 성과를 측정·감시하는 限界費用은 체증한다고 볼 때, 완전한 감시는 불가능하며 限界費用과 限界便益이 같아질 때까지만 수행함이 효율적이다[North(1992, p. 38)]. 특히 정치시장에서는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대리인에게 과도한 재량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

역사적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權威主義가 지배적인 정치형태로 자리를 잡았었다. 이런 경험에서 “지배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기구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또는 저지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다. 한편으로 지배자 또는 지배집단이 獨占的 地代를 쉽게 극대화할 수 있는 준칙과, 다른 한편으로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16) 순차적 선택모형은 경로의존성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수단일 뿐 아니라, 급격한 불연속성과 같이 합리적 선택모형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들을 다룰 수 있다. 순차모형은 Charles 1세의 폐배나 James 2세에 대한 Whig당의 승리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과 같은 특정한 우연적인 사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Fogel(1997, p. 23)].

(17) 경제주체들의 기대, 이념, 및 선호는 제도의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North(1992, p. 113), Priddat(1995, p. 209, 232), Richter(1994, p. 57)].

財產權 制度의 效率적 准칙간에 긴장관계가 종종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지 배계층이 권력을 이용함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제도적 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되고 여기서 제도의 진화를 방해하는 봉쇄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North(1988, pp. 25-28), Leipold (1996, p. 94), Priddat(1993, p. 605 이하)).

이상의 논의에서 ‘왜 제도적 體系간의 競爭압력이 비효율적인 제도구조를 제거하지 못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無知의 문제가 있다. 하이에크가 지적한 ‘根本的 無知’와 그것에 의해 파생되는 비의 도적 행위는 경쟁압력을 약하게 만든다. 나아가서 노스는 “의도적인 인간의 행위는 항상 의도하지 않았던 또는 우연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무지의 문제가 비효율적 제도구조를 존속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때로는 수 백년 동안 제도의 불변상태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비슷한 논리로써, ‘專制的 지배자들간의 정치적 경쟁은 정치적인 카르텔을 정당화하는 유인체계를 야기한다’는 명제도 가능하다(Richter(1994, p. 55)). 지배자들간의 談合(collusion) 혹은 共謀는 비효율적인 제도적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이 경우 제도간의 경쟁은 단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제도가 진화함에 따라 생겨나는 제도의 内部的 整合性의 문제도 있다. 어떠한 시기에 있어서도 潛在的이거나 顯在的인 긴장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특정한 문화에 고유한 규범 및 규칙의 진화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다시 제도변화의 방향과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North(1992, p. 54), Priddat(1993, p. 606)). 이때 공식적인 규칙은 흔히 변화의 대상이 되지만 비공식적인 제약은 자동적으로 변화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North(1992, p. 106 이하)).

제도적 변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스는 組織의 進化를 결정하는 요인들도 분석하고 있다. 조직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적에 따라 결합된 개인의 집합”이며 (North(1992, p. 5)), 조직체의 진화는 주로 制度的 基本틀 (Institutionelle Rahmenbedingungen)에 의존하게 된다. 조직은 제도적 기본틀에 의해 특화된 기회를 활용하고 경제적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추구한다. 제도적 틀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투입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의 구조와 조직의 발달간에는 상호의존성이 존재하게 되고, 피드백과정에 의해 조직이나 제도적인 틀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5. 制度的 變化와 知識: 制度的-認知的 接近方法의 發展

노스의 접근방법에서 특징적인 점은 제도적 변화의 거래비용론적 설명에다가 인식론적

방법론을 확대 적용하려 한 점이라고 하겠는데, 부분적으로는 인식론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制度的·認知的(institutional-cognitive) 接近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North(1994, p. 365 이하)). 사회과학에서 현실세계의 행동주체들의 주관적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사이먼(H. Simon)이 일찍이 강조했던 바이지만, 그는 제한적 합리성 측면을 강조했던 반면 여기서는 행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행위자가 자신의 선택 결과로 받게 되는 불완전한 還流(Feedback)에 초점을 두게 된다(North(1997, p. 10)).

그는 社會發展과 知識狀態간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제도적 틀이 지식과 기술획득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이 결국에는 사회의 장기적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North(1992, p. 93)).” 조직 구성원은 주어진 제도적 틀 안에서 극대화 행동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제도적 변화를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① 모든 종류의 지식투자에 대해 파생되는 수요, ② 조직된 경제활동, 축적된 지식, 및 제도적 틀간의 계속적 상호작용, ③ 비공식적인 제약의 점진적인 변화 등이 있다(North(1992, p. 93 이하)).

처음에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신고전학적 시각은 그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경제주체의 最適化 내지는 極大化 행동이라는 가정 대신에, 넬슨-윈터(R. Nelson & G. Winter)의 입장과 유사하게, 習慣的인 행동이야말로 일상적 교환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North(1994, p. 361 이하)). 한편 노스의 學習理論은 進化論의 制度經濟學의 가설과 양립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자석에서 잘 나타난다: “제도적 변화는 주로 상대가격의 변화와 재화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선호의 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주체의 학습능력에 의해 야기된다.”⁽¹⁸⁾

競爭과 制度的 變化的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학습의 정도는 조직체간의 경쟁의 심도를 반영한다”(North(1994, p. 362))고 지적하고 있다. 경쟁은 기업들로 하여금 노력하여 優位性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업들에게도 그런 우위성을 따라 가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제도적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경제주체의 지식 및 학습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변화의 속도는 학습정도의 함수이지만, 그러한 변화의 방향은 상이한 종류의 지식을 얻는데 따르는 기대수익의 함수이다(North(1994, p. 362)).”

이러한 학습이론에서는 個人的 經驗이 중요시되는데, 개인의 경험은 물리적인 주변환경과의 접촉에서 생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계 속의 생활에서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18) “But the most fundamental long-run source of change is learning by individuals and entrepreneurs of organizations[North(1994, p. 362)].”

인간은 나면서부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경험을 정형화하면서 주관적인 지적 모형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축적된 경험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적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객관적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하며, 학습과 정이란 바로 이렇게 개인적 경험이 개념화되고 보편화되는 과정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습과정의 결정요인은 주어진 信念體系(Belief structure)가 다양한 문화의 범주 안에서 어떻게 개인적 경험에 의한 지식을 濾過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North(1997, p. 11)).

이상과 같은 학습하는 인간상에는 학습과정의 經路依存性이 나타난다.⁽¹⁹⁾ 경제적인 외부환경은 한 사회의 공통된 문화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共有되는 精神的模型(shared mental model)’이 된다. 즉 학습은 단지 개인들의 경험의 산물일 뿐 아니라 문화속에 體化된 과거 세대들의 누적된 경험도 포함된다. 집단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은 시간을 통해 겹증되어 언어, 제도, 기술, 작업방식 속에 體化된 경험들로 이루어진다(Denzau and North(1994, pp. 18-21), North(1997, p. 11)).

노스의 인지적-제도적 인간상의 표출은 學習하는 人間像(Homo discens)과 일치하고 있다. 단지 인간의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잠재력과 관련해서는 사고의 차이가 엿보인다. 라흐만(Lachmann)과 포퍼(K. Popper)에 근거하고 있는 학습이론은 개인의 차원에서 적극적이며 혁신적으로 가설을 검사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주체는 자기 주위의 환경을 설명하고 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주관적 지적 모델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학습하는 인간(homo discens)’의 학습과정은 변화한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적응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설을 검사하는 적극적인 가능성에 의해서도 특징 지워진다. 이것을 통해 여태까지의 학습과정 및 경우에 따라 시장과정을 결정한 경로의존성을 떠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학습과정의 경로의존성은 전통 및 문화로 표출되는 세계관의 지속이나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自己 發見的 方法(Heuristik)을 바꾸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이른바 ‘認識論的 創造(Kognitive Kreation)’에 의해 경로의존성이 극복되고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설들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적극적 자기 발견적 방법(Positive Heuristik)이 확대된다. 학습행위의 적극적 부분에 대한 패턴예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외에는 그의 인간행동이론은 학습하는 인간상(Homo discens)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는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것 이야말로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⁰⁾

(19) “This strongly supports the idea that learning is irreversible[North(1994, p. 9)].” “The presence of learning creates path dependence in ideas and ideologies and then in institutions[North(1994, p. 27)].”

요컨대 노스는 인식론적 제도론을 주창하고 있는데, 제도적 구조, 경제주체의 인지체계 및 신념, 지식의 축적을 위한 유인체계 및 장애요인들 간에는 상호의존관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North(1994, p. 364)). 특히 제도가 갖는 복잡성으로 인한 인간행동을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제한된 지식, 경제과정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인식론적 제도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오스트리아學派의 사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Denzau and North(1994, pp. 7-9)).

노스는 사회간의 생산력 차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문화적 경험의 차이와 언어, 자연적 환경의 차이를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즉 이러한 차이는 각 사회의 제도적 기초조건과 학습노력이 인간의 주위환경에 대한 체험과 학습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상대적 성공 및 실패는 자연적 환경의 전제조건 외에 제도적인 기초조건의 효율성에 따라 달라진다. 말하자면 재화의 희소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의 학습과정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를 정체상태에 빠지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역사적으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 본 바와 같이 노스의 新制度經濟論은 오스트리아학파의 進化論的 制度主義 經濟學의 구성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 개인의 제한된 지식, 불확실성, 역사적 시간 속에서의 학습 및 진화적 과정의 불가역성 및 공개성, 이에 대한 인식 등은 제도적-인식론적 접근 방법을 위한 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입각하여 개인단위의 학습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오스트리아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6. 要約 및 結論

1970년대 이후로 노스는 주로 경제이론가로 활약하게 되는데 역사와 경제학에 대한 該博한 그의 지식을 통해 ‘新制度學派 經濟學’이라는 이론분야에서 선구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Fogel(1997, p. 19)).

노스의 제도이론의 출발점은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와 진화론적 제도이론을 제시한 오스트리아학파와 마찬가지로 方法論的 個人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신고전파적인 ‘經濟的人間(homo oeconomicus)’의 시각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인간상을 상정한다. 제한된 지식

(20) “Problems in politic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history, for example, all re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mental models and ideologies that have guided choices[Denzau and North(1994, p. 10)].”

과 무지의 행동을 고려한 경제과정의 분석은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이념에 의해 규제 받는다’는 견해는 ‘學習하는 인간(homo discens)’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도덕철학자들의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따라서 이러한 인간행동이론은 진화론적 제도주의가 지향하는 인간상과 부합한다고 하겠다.

신고전학파 이론에 대한 노스의 입장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 Nobel 경제학상 수상강연에 들어 있다. “신고전학파이론은 경제발전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데에는 부적합한 도구일 뿐이다. 그것은 시장의 작동에 관한 것이지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니다[North(1994, p. 359)].” 그러나 그는 장기간에 걸친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신고전학파 이론을 버리지 않고 수정해 간다. 그가 간직한 것은 ‘稀少性 및 그에 따른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가정과 微視經濟理論의 분석도구’였다. 그가 수정한 것은 ‘合理性의 假定(the rationality assumption)’이며, 그가 추가한 것은 ‘時間的次元(the dimension of time)’이다. 또한 그는 시간의 차원을 부가하면서 제도변화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는 종전의 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의 모형보다는 順次的選擇(sequential choice)의 모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Fogel(1997, pp. 20-23)).

또 제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去來費用이론을 응용하고 있지만 효율성기준으로서의 거래비용이론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런데 거래비용은 사회적인 노동 및 지식의 분업이 증대됨에 따라서, 또한 거래비용의 종류 및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 노동분업도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제에 적용되었고 또한 적용되고 있다. 이윤을 비용을 체외한 수익의 殘餘分이라고 정의하면 거래비용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비용은 機會費用이기 때문이다.

제도 및 제도변화의 效率性에 관한 문제는 노스에 의해 단지 거래비용의 감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제도는 거래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높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규칙제정에 의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거래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노스는 靜態的인 배분적 효율성 기준 대신에 動態的 효율성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법규의 효율성은 발명과 혁신이 창출하는 正의 외부효과가 內部化될 수 있고, 지식과 교육을 장려하며, 모험에 대해서도 응분의 보상을 해 줄 때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 즉 상대가격의 변화, 상대적 희소성, 정보비용의 변화, 선호의 변화 및 개인의 학습노력 등에 대한 분석은 제도적 진화에 대한 오스트리아학파의 입장과 유사하다. 특히 개인의 학습행위의 근원에 대한 문제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 사회발전의 經路依存性(Path dependence)과 제도적 진화의 봉쇄 위험성에 대한 논의는 학습하는 인간상 및 진화론적 제도경제학의 제도변화이론과 양립한다.

制度的-認知的 接近方法은 제도변화를 설명하면서, 거래비용이론을 논의의 핵심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주체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문제로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 하에서 지식의 문제에 대한 고려는 노스가 학습하는 인간(Homo discens)의 학습행위관과 양립하는 자신의 학습이론을 개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노스가 제기한 대로 신고전학파에 대한 대안적인 효율성개념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도의 비의도적인 진화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이 知識의 傲慢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밝힐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다.

부산 東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經濟學部 教授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전화: (051)240-2724

E-mail: yspark@daunet.donga.ac.kr

參考文獻

Coase, R.(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4**, 386-405.

_____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 1-44.

Denzau, A. and D. North(1994): "Shared Mental Models: Ideologies and Institutions," *Kyklos*, **47**, **1**, 3-31.

Dietl, H.(1993): *Institutionen und Zeit*, Tübingen.

Elsner, W.(1987): "Institutionen und Ökonomische Institutionentheorie: Begriffe, Fragestellung, Theoriegeschichtliche Ansätze," *Wist*, **1**, 5-14.

Engelhard, P., H. Geue, und C. Schädel(1997): "Das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RDP) Südafrikas — Eine Humanvermögenstheoretische Analys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46**, **2**, 215-240.

Fogel, R.W.(1997): "Douglas C. North and Economic Theory," in J.N. Drobak and J. Nye(eds.), *The Frontiers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Conference at Washington Univ.. March 1995 to Celebrate the Award of the 1993 Nobel Prize in Economics to Prof.

- North, Academic Press.
- Hermann-Pillath, C.(1996): "Thorstein Veblen's Menschenbild: Theoretische Grundlagen und Empirische Relevanz," in R. Penz und H. Wilkop(eds.), *Zeit der Institutionen — Thorstein Veblens Evolutorische Ökonomik*, Marburg, 83-131.
- Krüsselberg, H-G.(1984): "Wohlfahrt und Institutionen: Betrachtungen zur Systemkonzeption im Werk von Adam Smith," in F-Xaver Kaufmann and H-G. Krüsselberg(eds.), *Markt, Staat und Solidarität bei Adam Smith*, Frankfurt, New York, 185-216.
- Leipold, H.(1996): "Zur Pfadabhängigkeit der Institutionellen Entwicklung, Erklärungsansätze des Wandels von Ordnungen," in D. Cassel(eds.), *Entstehung und Wettbewerb von Systemen*, Berlin, 93-115.
- North, D.(1986):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JITE)*, **142**, 230-237.
- _____ (1988): *Theorie des Institutionellen Wandels: Eine neue Sicht der Wirtschaftsgeschichte*, Tübingen.
- _____ (1989): "A Transaction Cost Approach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olitics and Economics,"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JITE)*, **145**, 661-668.
- _____ (1992): *Institutionen, Institutioneller Wandel und Wirtschaftsleistung*, Tübingen.(tr. *Institution,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 Press, 1990)
- _____ (1994): "Economic Performance Through Time," *American Economic Review*, **84**, 3, 359-368.
- _____ (1995): "The Adam Smith Address: Economic Theory in a Dynamic World," *Business Economics*, **30**, 1, 7-12.
- _____ (1997): "Prologue," in J. Drobak and J. Nye(eds.), *The Frontiers of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Conference at Washington Univ., March 1995 to Celebrate the Award of the 1993 Nobel Prize in Economics to Prof. North, Academic Press, 3-12.
- Priddat, B.(1993): "D. North und R. Fogel, Anmerkungen zu den Nobelpreisträgern 1993," *Wirtschaftsdienst*, **11**, 603-608.
- _____ (1995), "Ökonomie und Geschichte: Zur Theorie der Institutionen bei D. North," in E. Seifert und B. Priddat(eds.), *Neuorientierungen in der Ökonomischen Theorie*, Marburg, 205-239.

Richter, R.(1990): *Geldtheorie*, Berlin u.a.

_____ (1994): *Institutionen Ökonomisch Analysiert*, Tübingen.

_____ (1996): *Die Neue Institutionenökonomik des Marktes*, Schriftreihe des Max-Planck —
Instituts zur Erforschung von Wirtschaftssystemen, 5, Jena.

Richter, R und U. Bindseil(1995), “Neue Institutionenökonomik,” *Wist*, 3, 132-140.

Schmidtchen, D.(1989): “Evolutioische Ordnungstheorie Oder: Die Transaktionskosten und
das Unternehmertum,” *ORDO*, Band 40, Stuttgart und New York, 161-182.

Schreiter, C.(1993): *Evolution und Wettbewerb von Organisationsstrukturen. Ein
Evolutionsökonomischer Beitrag zur Volkswirtschaftlichen Theorie der Unternehmung*,
Marburg.